

## 8. 建設業法 施行規則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4-211號 1994. 8. 3

### 1. 개정이유

1994년 1월 7일 건설법중개정법률(법률 제4724호)이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건설업체가 국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, 기타 건설업에 대한 규제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건설공사에 의하여 완성된 시설물에는 석재, 금속 기타재료로 표지판을 제작하여 영구적 시설물로 설치하되, 표지판에는 공사명, 공사기간, 공사금액, 발주자, 설계자, 감리원 또는 현장감독자의 성명,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, 현장기술자와 준공검사자의 성명을 명기하도록 함.
- 나. 외국건설업체의 범위를 외국인이나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인으로서 외국인이 법인의 지분을 50% 이상을 소유하거나,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 정하고, 이들에게 건설업면허를 한 경우 건설업면허증, 면허수첩, 면허대장 등에 당해 업체의 국적을 명시하도록 함.
- 다.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하도급공사 및 자기공사의 기성실적 증명방법을 개선함.
- 라.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청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, 예정가격의 85%미만의 금액으로 도급받은 공사중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 절차를 정함.

마. 건설업면허신청, 면허갱신 신청 및 건설업자의 변동사항 신고시 구비서류를 감축함.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 : 건설경제과장, 전화 500-2903, 290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전화번호

**장인혼을 현장에 한국혼을 세계에**